

「2025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표창 수여계획 연장 공고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요

-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로 우수 사례 전파와 국민인식 제고
- 디지털을 산업 쏠분야로 확산시키고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2 수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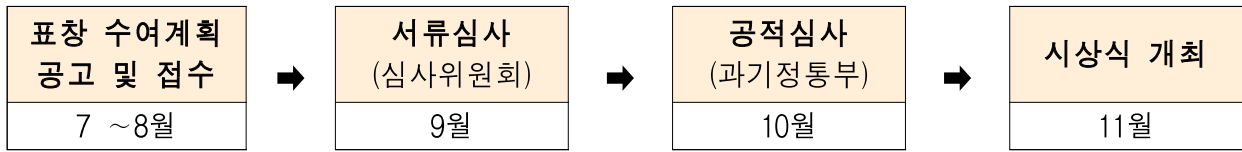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3 추천 대상

- 정보통신기술 개발·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 타산업 연계 및 기존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디지털 확산에 기여
 - 사회 문제 해결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디지털 일상화에 기여
 - 그 외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

4 추진 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개인 [붙임3]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자료	자유양식
	- (민간인) 인사기록카드*	자유양식
	-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단체 [붙임4]	- 신청요약서	서식5
	- 공적조서	서식6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7
	- 공적증빙자료	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6 행정사항 안내

-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9월 5일(금)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inno@kfict.or.kr)으로 제출
 - 작성한 한글파일(hwp)과 직인 등이 포함된 원본 스캔파일(pdf) 전부 제출
 - 파일명은 '1. 제출서류명_성명(개인) 또는 기관명(단체)'로 작성
-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 (☎ 02-2132-2106)

-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장관표창 신청서류(개인용).
 4. 장관표창 신청서류(단체용). 끝.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개인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재직기간 3년 이상 ▪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외 부처 공무원 일 경우,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근속표창 제외)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① 자격기준

○ 개인표창

- (일반국민)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공무원) 추천일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②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아래의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 * 금품비리, 향응수수, 예산의 횡령·배임·절도·사기, 성 비위,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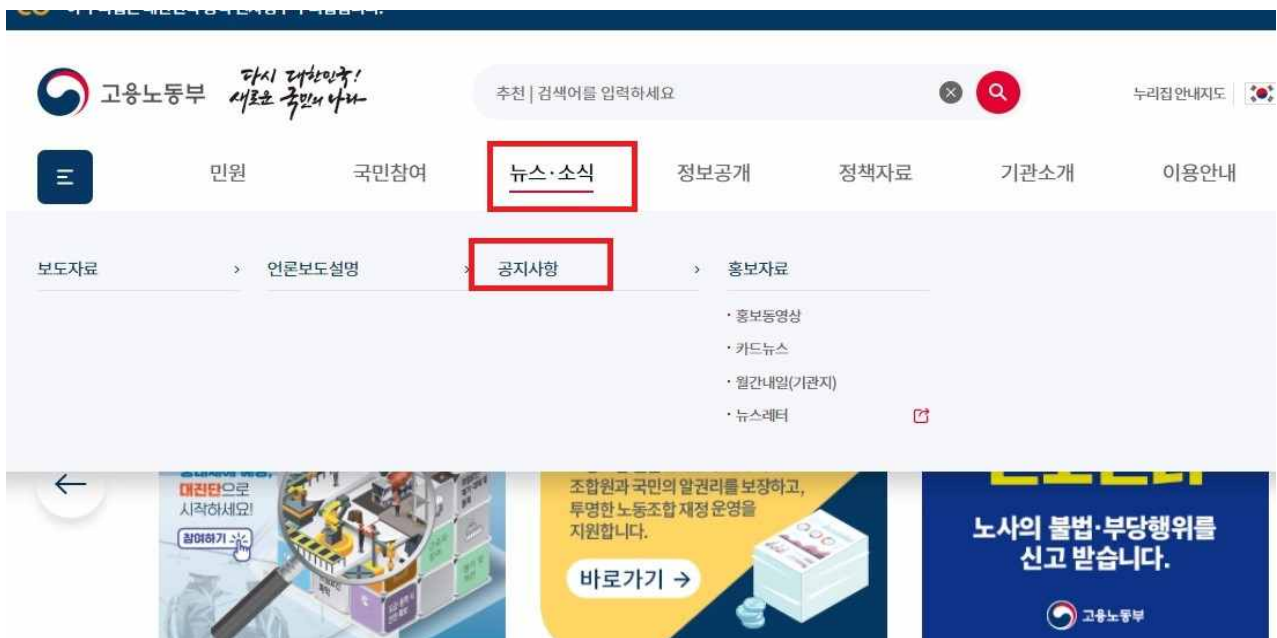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안내(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 공고 | 행사 | 입찰 | 인사 | 포상대상자공개 | 기타

전체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총 게시물 : 11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1	[공고]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12.29	2706
10	[공고]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02.07	6392
9	[공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12.29	10121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누리집안내지도 | 국가상징 알아보기 | 어린이 | 화면크기 | Language

공정거래위원회

소식·뉴스 | 정책·제도 | 정보공개 | **심결·법령** | 민원·참여 | 해외경쟁정책 | 기관소개

위원회소관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바로가기 >

- 의결서·재결서
- 심사관전결경고서
- 심의속기록
- 법위반사실조회
- 법위반조회발급

- 공정거래법
- 할부거래법
- 가맹사업법
- 제조물책임법
- 하도급법
- 방문판매법
- 대리점법
- 기타
- 약관법
-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기본법
- 표시광고법
- 대규모유통업법
- 생협법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관련법령 | 서식관련 | 자주물어보는질문

◆ 법위반사실조회

검색어: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검색**

10

번호	연도	피심인명	조치유형
데이터 없음			

<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누리집 안내지도 | 국가상징 알아보기 | 화면크기 | Language

 고용노동부 Q 통합검색

민원 | 국민참여 | 뉴스·소식 | **정보공개** | 정책소개 | 기관소개 | 이용안내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개방

청렴정책공개

예산·법령정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정보공개 기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②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6.16.~2027.06.15.
- * 2024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12.30.~2027.12.29.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고액순 전체 10개씩

전체 지역-전 업종-전체 검색

장관표창 제출서류
(개인용)

[제출서류 서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 ② 공적조서 [서식2]
-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④ (공무원)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관표창 수여가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1. 개인용】

신청요약서(개인)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급	임원 여부	생년월일
000	00000000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명)	00	0 / X	00.00.00
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00000@000	

공적기간 및 기사훈내역

공적기간	00년 00개월
기사훈격	세부내용 ※ 장관표창 이상만 작성
장관표창('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이야기 (일시·내용)
(예시) 중대재해 (제2025-004호)/ 해당사항 없음	(예시) 고발1/과징금1/ 해당사항 없음	(예시) 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	(예시) '00년 견책(사면)/ 해당사항 없음	(예시) 언론보도('25.0.0)/ 해당사항 없음

* 소속 기관명으로 조회

【서식2. 개인용】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사업자등록증 상 명칭)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혁신 유공	공적 기간	년 개월 (25년 7월 15일 기준)
공적요지(70자 이내)			
<p style="color: red;">※ 60~70자 작성</p> <p style="color: red;">※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p> <p style="color: red;">※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p> <p>◇ 예시</p> <p>-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p> <p style="color: red;">※ 조사자 :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공무원)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p> <p style="color: red;">※ 추천관 :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 (공무원)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p>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p style="color: red;">-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세부내용은 별도증빙으로 제출</p> <p style="color: red;">-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 사항은 불인정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링크 등 형식에 제한 없음)</p>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공 적 내 용

□

○

-

-

○

-

-

□

○

-

-

○

-

-

【서식3. 개인용】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사업자등록증 상 명칭 (주민등록지)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1)~21) 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 1) 란의 “소속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 2) 란은 추천 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 8)~13) 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 14)~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 17) 란은 재직경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포창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 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 20) 란은 과거 포상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장관표창 제출서류
(단체용)

[제출서류 서식]

- ① 신청요약서 [서식5]
- ② 공적조서 [서식6]
-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7]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관표창 수여가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5. 단체용】

신청요약서(단체)

기본정보

단체명	대표자	구분	설립일
000000	000	대기업/중소기업/대학/공공기관/기타	0000.00.00
주소	(단체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담당자 이메일	00000@000

기서훈내역

* 단체명으로 받은 사항만 기재

기서훈명	세부내용
장관표창('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물의야기 (일사내용)
(예시) 중대재해 (제2025-004호)/ 해당사항 없음	(예시) 고발/과징금/ 해당사항 없음	(예시) 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	(예시) 언론보도('25.0.0)/ 해당사항 없음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p style="color: red;">-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세부내용은 별도증빙으로 제출</p> <p style="color: red;">-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 사항은 불인정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증명서, 인증서, 신문기사 등 형식에 제한 없음)</p> <p style="color: red;">- 아래 양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항목 추가만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일반현황</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radio"/> 조직구성 및 재무현황</p> <p style="margin-left: 40px;">-</p> <p><input type="checkbox"/> 목표 및 비전</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radio"/> 비즈니스 모델 및 향후 투자계획</p> <p style="margin-left: 40px;">-</p> <p><input type="checkbox"/> 주요성과</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radio"/> 사업수행실적</p> <p style="margin-left: 40px;">-</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radio"/> 매출 및 수출 신장도</p> <p style="margin-left: 40px;">-</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radio"/>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p> <p style="margin-left: 40px;">-</p>	

공 적 내 용

□

○

-

-

○

-

-

□

○

-

-

○

-

-

【서식7. 단체용】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장관표창 후보자

단체명			
주소	단체의 주소지	직위(급)	(공란)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

단체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